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정원석 연구위원

-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이하 “연금 자유화”)하였음.
 -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적립금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수령하였으나 그 이상 수령 시에는 최대 55%로 중과세 하였음.
 - 영국 정부는 연금 자유화 이후 중과세 하던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여 일시금 선택에 대한 세(稅)부담을 경감시켰음.

-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관찰되었음.
 - 가입자 절반이 상시 출금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FAD) 혹은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등을 이용하여 일시금을 수령하였음.
 - 제도 변화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나, 이자율이 낮은 종신연금 수령 비율은 감소하고 실적배당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추후 일시금 수령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Drawdown) 수령비율은 대폭 증가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 영국의 연금 자유화 이후 가입자 행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이하로 영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 또한 다양하지 못해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연금 자유화 이후 적립금 일시금 수령이 급증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은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¹⁾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이하 “연금 자유화”²⁾)하였다.

-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했음.
 - 과거에는 적립금의 25%에 대한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 하였으며, 나머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최대 55%의 세율로 중과세 하였음.
 - 연금 자유화 이후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되며,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함.³⁾
- 대표적인 연금화 형태로는 일반적인 연금(이하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펀드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에 따라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이하 “Drawdown”)이 있음.⁴⁾

■ 연금 자유화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활용 방법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입자의 적립금 수령 행태에 영향을 미침.

-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및 Drawdown 등 금융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일시금 인출 후 금융상품 직접투자, 부동산 투자 혹은 소비 등이 가능해짐.
 - 연금화 상품인 종신연금의 낮은 이자율 및 Drawdown의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에 대한 불만은 영국 정부의 연금 자유화 시행 배경이 됨.
- 금융회사는 이탈 가능성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묶어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발생함.

1) 영국의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제도는 1921년 금융법(Finance Act)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음.

2) 영국 현지 언론은 이를 Pension Freedom이라 표현하고 있음.

3) 2016년 현재 영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밴드	과세표준	세율
Personal Allowance	~£11,000	0%
Basic rate	£11,001~£43,000	20%
Higher rate	£43,001~£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45%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rates>).

4) 이는 자산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미국 변액연금과 유사함.

- 본고에서는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가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령 행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함.

2. 영국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



- 영국의 퇴직연금은 적립기와 수령기⁵⁾로 이원화되어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함.
 - 퇴직연금 수령기에는 적립금의 25%까지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며,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종신연금 혹은 Drawdown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종신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 서만 판매할 수 있음.
 - Drawdown은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판매함.
- Drawdown은 종신연금의 낮은 이자율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되었음.
 - Drawdown은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 단,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생활자금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원본 손실 가능성도 있음.
 - Drawdown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이후 종신연금으로 전환 가능함.
- 연금 자유화 이전에는 Drawdown 가입 시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수령이 불가능하였음(표 1) 참조.
 - 적립금의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간 상한액 이내에서만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거나(Capped Income Drawdown), 가입자가 충분한 노후소득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연간 12,000파운드⁶⁾까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음(Flexible Income Drawdown).

5) 적립기 연금은 종자돈을 만든다는 의미로 Pension, 수령기 연금은 일정한 주기로 자금을 수령한다는 의미로 Annuity라고 칭함.
6)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000파운드.

■ 연금 자유화 이후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Flexi-Access Drawdown(이하 “FAD”)이 도입됨.

- FAD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단, FAD 가입 시점에 전체 적립액의 25%까지 비과세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가입 시점에 25% 이내로 수령하고 이후 추가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Flexible Income Drawdown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은 연금 자유화 이후 FAD로 이전을 허용함.
- FAD 등 Drawdown을 이용한 수령형태를 결정형 연금펀드(Crystallized Pension Fund)라고도 칭함.

■ 연금 자유화 이후 종신연금과 Drawdown 이외에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Uncrystallized Funds Pension Lump Sums)가 새로이 도입 됨.

- UFPLS 가입자는 자유로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나, Drawdown처럼 UFPLS 가입 시점에 전체 적립금의 25%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는 없음.
 - 단, 추후에라도 적립금 인출 시마다 인출금액의 25%에 대해서는 비과세, 나머지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표 1〉 영국의 연금수령 형태

구분	수령방식	특징	도입 시기
종신연금(Annuity)	사망 시까지 일정액 수령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Capped Income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ble Income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충분한 소득원이 존재할 경우 일부 일시금 인출이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Access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제한 없이 적립금 일시금 인출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UFPLS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 가능	일시금 인출 시 마다 인출금액의 25%는 비과세, 75%는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3. 연금 자유화 이후 연금 수령자 행태



■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령하는 계좌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연금 자유화가 시작된 2015년 2분기에 20만 계좌가 넘는 적립금 수령계좌 수는 4분기에 12만 7천 계좌 수준으로 감소하였음(〈표 2〉 참조).
 - 특히, 2분기 수령계좌 수는 전년도 동기 95,372계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일시금 수령 가능시기를 기다려 온 가입자들이 일시에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보임.

■ 종신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 수는 2013년 2분기 89,896계좌에서 연금 자유화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2,418계좌로 2년 전 동일 기간의 14% 수준으로 급감함.

- 전체 일시금 수령 계좌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 가입자가 종신연금 대신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들은 종신연금보다는 적립금을 추후 현금 혹은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FAD 혹은 UFPLS 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표 2〉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선택 추이

(단위: 계좌)

구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좌 수	비율	계좌 수	비율	계좌 수	비율
총 연금수령 계좌 수	204,581	-	197,443	-	127,094	-
종신연금	12,418	6%	23,385	12%	21,289	17%
Drawdown	53,543	26%	54,604	28%	37,150	29%
일부 일시금	3,154	2%	N/A	N/A	3,045	2%
전체 일시금	118,574	58%	113,100	57%	65,610	52%

주: 1) 본 통계량은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전체 일시금은 UFPLS와 FAD 및 Small pot 등을 이용하여 전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 수임.

3) 2분기 자료에는 비과세 한도(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이후 용처가 나와 있지 않은 16,892(약 8%)계좌로 인해 비율의 총합은 92%임.

자료: FCA(2016), "FCA pension freedoms data collection exercise"; FCA(2016),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재구성.

■ 가입자 중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종신연금 이자율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입자의 종신연금 가입유인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⁷⁾
 - 가입자들은 연금 자유화 전까지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었으므로 종신연금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수령해 왔음.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계좌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3월 영국 재무장관의 연금 자유화 발표 이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가입자들이 자유로운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연금 자유화 이후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후 FAD 혹은 UFPLS 등을 이용해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1〉 연금 자유화 전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종신연금 계약건수

(단위: 계좌)



자료: FCA(2015), “FCA pension freedoms data collection exercise” 자료 재구성.

■ 반면, 연금 자유화 이후 Drawdown은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연금 자유화 이전 Drawdown은 높은 수수료 및 최소 가입금액 등으로 인해 적립금의 규모가 1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
 - 연금 자유화 이전인 2013년 종신연금 판매는 총 353,000계좌였으며 판매액은 120억 파운드였던 반면, Drawdown은 총 22,000계좌가 판매되고 판매금액은 12억 파운드였음(〈그림 2〉 참조).

7) The guardian(2013. 2. 15), “Annuities VS drawdown” 참조.

- 연금 자유화 이후 가입금액 등이 대폭 조정되어⁸⁾ Drawdown과 종신연금의 선택비율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 및 은퇴관리 전문회사인 영국 Aegon사의 경우 연금 자유화 이후 FAD로의 연간 자산 이동이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연금 자유화 이전 종신연금과 Drawdown 가입 추이

(단위: 천 계좌, 10억 파운드)



자료: FCA(2014, 12), "Retirement income market study: Interim Report".

4. 결론 및 시사점



- 영국 연금 자유화의 특징은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과세 완화와 적립금 수령 방식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전체 적립금의 25% 이내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그 이상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최대 55%로 중과세 하였으나, 이를 세율 0~45%의 종합소득과세로 전환함.
 - 또한, FAD와 UFPLS 등 새로운 적립금 수령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의 선택을 확대함.

8) Financial Times(2016, 4, 1), "Pension freedoms on year on: Boomers shun sports cars for DIY" 참조.

- 이는 세계 변화 및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노후준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금 자유화 시행 이후 가입자와 금융회사는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시금 수령에 대한 적용 세율이 완화됨에 따라 일시금 수령자 수가 대폭 증가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자 중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일시금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Drawdown을 선택한 반면, 종신연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대폭 감소하였음.
- 특히, Drawdown의 성장은 수수료 및 최소 납입금액 하향 조정 등 새로운 제도에 반응한 금융회사의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연금 자유화가 시행된 지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 단, 일시금을 이용한 투자와 Drawdown의 특성상 수령기 연금자산 및 노후소득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5조 원으로 상당한 적립금이 쌓여 있으며, 적립금의 증가 속도 역시 지난 1년간 약 20조 원이 증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⁹⁾
 - 올해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제도가 확대 되면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
-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¹⁰⁾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영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세제 측면에서는 낮은 퇴직소득세율과 다양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법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비율 제고가 절실하나 대부분 일시금 수령자들에 대한 실질 퇴직소득세율이 3% 미만임.¹¹⁾

9) 금융감독원(2016. 6),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10) 금융감독원(2016. 6),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이는 연금 자유화 이후 일시금 선택이 급증한 영국이 적용하는 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임.
- 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¹²⁾ 및 세율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령 행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수령방법 측면에서는 적립금 선택 방법이 일시금과 연금¹³⁾만으로 다양하지 못하며, 연금의 이자율이 낮은 경우 일시금 선택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역시 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금 자유화 이후 일시금 수령이 급증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제 측면에서는 공제 방식 등을 조정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실질 퇴직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감면 혜택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를 통한 연금화 수령 유도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영국 Drawdown과 유사한 실적 배당형 연금상품과 종신연금이 연계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kiri](#)

12)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함.

13) 보험회사의 종신수령연금과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 등의 정기수령연금을 망라하여 연금으로 칭함.